



# 정 선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532호 2020. 6. 17. (수)

## 【고 시】

-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.....3
- 정선군 고시 제2020-130호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5

## 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0-715호 남면(증산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.....9
- 정선군 공고 제2020-716호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3-19호선) 공사완료 공고...10
- 정선군 공고 제2020-717호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2-4호선) 공사완료 공고...11
- 정선군 공고 제2020-727호 정선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.....12

- 정선군 공고 제2020-746호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.....15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# 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0-125호

##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(여량) 군계획시설(하수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5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67번지 일원(변경없음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(하수도) 사업
- 2) 명 칭 :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
- 1) 면 적 : 4,417m<sup>2</sup>
- 2) 규 모

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고
시설명	결정 면적	금회시행	
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	4,563m <sup>2</sup>	사업부지면적 : 4,417m <sup>2</sup> 당초 : 기시행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(A=158.10m <sup>2</sup> ) 변경 : 기시행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(A=158.10m <sup>2</sup> ) 오수처리시설(휴게실) 신축(A=127.10m <sup>2</sup> )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(변경없음)

1)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
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상하수도사업소)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0.12.31.(변경없음)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(변경없음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	성 명	주 소	
1	여량면 여량리	667	잡	4,602.7	4,417	정선군	-	
계				4,602.7	4,417			
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정선군 고시 제2020-130호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

- 1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,
- 2. 강원도 고시 제2020-163호(2020.5.1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과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6월 12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(주)성신미네필드는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, 관련법에 의한 추가적 개발(증설)이 불가함에 따라, 기업애로 해소 및 공장 증설투자 유치로 생산효율을 개선하고 고품위 석회석 증산 및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691-1번지 일원

라. 면 적 : 지구단위계획구역 32,326㎡, 용도지역(변경) 12,087㎡

마.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별첨 조서 참조

바.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 (정선군청 도시과 비치)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 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 고	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	
총 계		1,219,720,000	-	1,219,720,000	100.00		
도시지역계		42,548,998	-	42,548,998	3.49		
도시 지역	주거 지역	소 계	5,023,056	-	5,023,056	0.41	
		제1종일반주거지역	1,137,131	-	1,137,131	0.09	
		제2종일반주거지역	3,517,798	-	3,517,798	0.29	
		제3종일반주거지역	80,711	-	80,711	0.01	
		준주거지역	287,416	-	287,416	0.02	
	상업지역	소 계	1,120,435	-	1,120,435	0.09	
		일반상업지역	1,103,580	-	1,103,580	0.09	
		근린상업지역	16,855	-	16,855	0.00	
	공업지역	소 계	611,392	-	611,392	0.06	
		일반공업지역	306,285	-	306,285	0.03	
		준공업지역	305,107	-	305,107	0.03	
	녹지지역	소 계	35,794,115	-	35,794,115	2.93	
		보전녹지지역	3,800,625	-	3,800,625	0.31	
		생산녹지지역	903,537	-	903,537	0.07	
		자연녹지지역	31,089,953	-	31,089,953	2.55	
	관리 지역	소 계	225,102,440	증) 12,087	225,114,527	18.46	
보전관리지역		94,929,560	-	94,929,560	7.78		
생산관리지역		27,734,380	-	27,734,380	2.27		
계획관리지역		102,438,500	증) 12,087	102,450,587	8.40		
농림지역		943,987,576	감) 12,087	943,975,489	77.39		
자연환경보전지역		8,080,986	-	8,080,986	0.66		

※ 기정 :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(강원도 고시 제2019-359호, 2019.09.06.)

☑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m <sup>2</sup> 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①	정선군 남면 유평리 691-6번지 일원	농림지역	계획 관리지역	12,087	-	· 성신미네필드 공장부지의 증설 및 신축이 현 용도지역에서 불가한 실정으로 기업 애로 해소 및 공장증설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

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㉕	성신미네필드 지구단위 계획구역	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691-1번지 일원	-	증)32,326	32,326	금회결정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 (㎡)			결 정 사 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㉕	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691-1번지 일원	-	증)32,326	32,326	· 성신미네필드 공장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함.

③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.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 면 표시번호	가 구 번 호	기정면적 (㎡)	가 구		증 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 (㎡)		
	계	-	-	32,326	증) 32,326	
A	공 업 용 지	-	유평리 691-1번지 일원	26,262	증) 26,262	
B	공공시설용지	-	유평리 693-1번지 일원	4,159	증) 4,159	
C	녹 지 용 지	-	유평리 산21번지 일원	1,905	증) 1,905	

나.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 면 표시 번호	가 구 번 호	기정면적 (㎡)	가 구		증 감 (㎡)	비 고
			위 치	변경면적 (㎡)		
	계	-	-	32,326	증) 32,326	
A	공 업 용 지	-	-	26,262	증) 26,262	
	A-1	-	유평리 691-6번지 일원	8,103	증) 8,103	
	A-2	-	유평리 691-1번지 일원	18,159	증) 18,159	
B	공 공 시 설 용 지	-	-	4,159	증) 4,159	
	B-1	-	유평리 693-1번지 일원	4,097	증) 4,097	
	B-2	-	유평리 693-1번지 일원	62	증) 62	
C	녹 지 용 지	-	-	1,905	증) 1,905	
	C-1	-	유평리 산21 일원	291	증) 291	
	C-2	-	유평리 672-1 일원	50	증) 50	
	C-3	-	유평리 산57-3 일원	130	증) 130	
	C-4	-	유평리 산57 일원	396	증) 396	
	C-5	-	유평리 산57-8 일원	1,038	증) 1,038	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신설	A-1 (공장용지)	유평리 691-6번지 일원	용 도	·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[별표1]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, 하목(식당, 사무실 등) - 제14호의 업무시설 나목 1) (사무실 등) -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	
			건폐율	· 60% 이하	
			용적률	· 150% 이하	
			높 이	· 5층이하 (공작물 높이 30m이하)	
			배 치	· 도면참고	
			형 태	· 철골 및 조립식구조	
신설	A-2 (공장용지)	유평리 691-1번지 일원	용 도	·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[별표1]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, 하목(식당, 사무실 등) - 제14호의 업무시설 나목 1) (사무실 등) -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	
			건폐율	· 60% 이하	
			용적률	· 150% 이하	
			높 이	· 5층이하 (공작물 높이 30m이하)	
			배 치	· 도면참고	
			형 태	· 철골 및 조립식구조	
신설	B-2 (경비실)	유평리 693-1번지 일원	용 도	·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[별표1] -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(경비실)	
			건폐율	· 30% 이하	
			용적률	· 30% 이하	
			높 이	· 1층	
			배 치	· 도면참고	
			형 태	· 조립식구조	

# 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0-715호

## 남면(증산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

남면(증산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의 증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      치 : 정선군 남면 무릉리 425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 사업(증산 공공하수처리시설)
  - 나. 명 칭 :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
- 3. 사업의 면적 (금회시행)
  - 가. 규 모 : 공공하수처리시설 Q=9,500m<sup>3</sup>/일  
(기존 Q=6,000m<sup>3</sup>/일, 금회증설 Q=3,500m<sup>3</sup>/일)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  - 나.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- 5. 사업기간
  -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  - 나. 준 공 일 : 2019. 3. 29

정선군 공고 제2020-716호

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3-19호선) 공사완료 공고

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3-19호선)의 개설 공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 : 정선군 남면 무릉리 527-10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3-19호선) 사업
  - 나. 명 칭 :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3-19호선) 개설공사
3. 사업의 면적 (금회시행)
  - 가. 면 적 :  $A=1,611\text{m}^2$ ( $L=260.86\text{m}$   $B=6.0\text{m}$ )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  - 나.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5. 사업기간
  -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  - 나. 준 공 일 : 2020. 5. 20.

정선군 공고 제2020-717호

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2-4호선) 공사완료 공고

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2-4호선)의 개설 공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 : 정선군 남면 무릉리 624-20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2-4호선) 사업
  - 나. 명 칭 :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소로2-4호선) 개설공사
3. 사업의 면적 (금회시행)
  - 가. 면 적 : A=758m<sup>2</sup>(L=89.6m B=8.0m)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  - 나.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5. 사업기간
  - 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  - 나. 준 공 일 : 2020. 4. 03.

정선군 공고 제2020-727호

정선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

정선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0년 6월 5일

정 선 군 수

1. 취지 및 목적 :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
2. 행정예고기간: 2020. 6. 5. ~ 2020. 6. 25. (20일간)
3. 관련근거
 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제7호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12조제2항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, 제160조제3항(과태료)
  - 나.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
  - 다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7(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
  - 라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,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4. 신고제 운영사항
  - 가. 신고대상 :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(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)에 주·정차된 차량
  - 나. 운영시간 : 평일 08:00~20:00
    - ※ 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
    - ※ 어린이 보호구역 내(초등학교) 4대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
  - 다. 신고방법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
## 라. 신고요건

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
-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- 안전표지[주·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(황색실선 또는 복선)]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

## 마. 과태료 부과: 위반지역,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시 부과

- ※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8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7(어린이보호 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에 따라 부과

## 5. 시 행 일 : 2020. 6. 29.

- ※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(6.29~7.31) 운영  
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

## 6. 과태료 부과 시기 : 2020.8.3.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

## 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가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제 출 처 : 정선군 안전과[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문화예술회관 2층]

다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(26131) 또는 팩스 (FAX 033-560-2174)

라. 제출양식 : 의견 제출서 (붙임)

마. 제출기한 : 2020. 06. 25.(목)

바. 문의사항 : 정선군 안전과 교통지도팀(033-560-2511)

- 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

정선군 공고 제2020-746호

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 
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군 고한읍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6월 16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건 명 :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- 나. 위 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-26번지 일원
- 다. 면 적 : 46,030㎡(변경없음)
- 라. 주요변경내용 : 지구단위구역 내 야생화 쿠키체험장의 건축물 층수 변경  
(높이변경 없음)

2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
3. 공람장소 및 기간

- 가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, 고한읍사무소
- 나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(2020. 6. 16 ~ 2020. 7. 01)

4.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실음 생략

5.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도면 : 실음 생략

6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과, 고한읍사무소로 서면 제출
7. 기타사항 :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고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